

「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10월 23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04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61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0년 11월 04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과)

가. 제안이유

강원도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·시군 통합 관광전문기구로서 ‘강원도 관광재단’을 강원도 출연기관으로 설립함에 따라, 재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재단설립 목적(안 제2조)
 - 국내·외 관광홍보 및 관광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
- 수행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 -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관광콘텐츠 확충 등 11개 사업 규정

- 재정지원, 공유재산 대부·사용에 관한 사항(안 제4~5조)
 - 재단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, 공유재산 대부·사용 허가 가능
- 업무의 위탁·대행, 소속 공무원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(안 제6~7조)
 - 관광진흥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재단에 업무 위탁·대행 가능
 -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파견근무 가능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용섭)

- 본 조례안은

강원도의 2019년 10월 강원관광재단설립 관련 도·시·군 업무협약 결과 2020년 10월에 출범, 다음 달 공식 업무에 들어가는 「강원도 관광재단」을 강원도 출연기관으로 설립함에 따라,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조례안의 형식은 본칙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

안 제2조에서는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인

“강원도 관광재단”설립 목적

안 제3조에서는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관광콘텐츠 확충 등

재단의 11가지 수행사업

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재정지원, 공유재산 대부·사용에 관한 사항

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업무의 위탁·대행, 소속 공무원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

각각 규정하고 있으며,

- “강원관광재단”은 도·시군 통합 관광전문기구로서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지원을 통한 하나 된 관광정책을 추진으로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통한 균민소득 증대가 기대되며 조례안 제정에 따른 상위법 저촉사항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없음
- 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-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부.

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재단의 설립)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은 관광자원 개발, 국내·외 관광 홍보 및 관광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 콘텐츠 확충
2. 국내·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
3. 기업회의, 인센티브 관광, 국제회의, 전시회, 크루즈 등 육성 지원
4.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
5.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
6. 관광시장 조사·연구·컨설팅 및 정보 제공
7. 국내·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
8.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
9.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
10.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

1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

제4조(재정지원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제5조(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)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,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6조(업무의 위탁·대행) ① 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.

제7조(공무원의 파견)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,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평창군의 출연 또는

보조와 관련하여 「강원도 관광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 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.